

인사노무에 관한 토막지식

◆ 기업이 알아야 할 2017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

1. 최저임금 인상

-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,470원으로 인상됨
-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,760원,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으로 월 1,352,230원(6,470원 x 209시간)임

2.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

- 2017.1.1. 자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
-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봄

3.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

- 1) 요건 -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-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-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- 2) 지급액 :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(최대 150만원)을 휴가기간(90일)에 대하여 지원 (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)

4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

-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,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
- 대체인력지원금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

5.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

-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'18.12.31일까지 연장하되,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%에서→19%로 조정
-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.

6.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확대 및 임금단가 인상

-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물량을 880명에서 1,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임금단가를 6,300원에서 6,520원으로 인상

7.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

-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해당구간에 대한 세율을 40%로 인상
-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종전		개정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,200만원 이하	6%	1,200만원 이하	6%
1,200~4,600만원	15%	1,200~4,600만원	15%
4,600~8,800만원	24%	4,600~8,800만원	24%
8,800~1억 5천만원	35%	8,800~1억 5천만원	35%
1억 5천만원 초과	38%	1억 5천만원~5억원	38%
-		5억원 초과	40%

8.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

-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% 수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(50만원)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였음
-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- 끝 -